|  |
| --- |
| **문제에서 답안의 분량을 제한한 경우 제한된 분량을 초과한 부분은 채점에서 고려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 1】(10점)**

회계감사에 대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다음은 회계감사를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에서 구성원이 서로 토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다음 중 부적절한 사항 3가지를 아래 양식에 따라 그 번호를 쓰고 판단의 근거를 서술하시오.

**<답안양식>**

|  |  |
| --- | --- |
| 번호 | 판단의 근거 |
|  |  |
|  |  |
|  |  |

(1)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이 높을수록, 감사인의 감사비용은 높아진다.

(2)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어떤 오류도 없이 회계기준을 완전하게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 중요성은 정보가 유용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일차적 질적 특성이기보다 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경계선이나 구분점을 제공한다.

(4) 감사인이 목표로 한 위험, 고유위험, 통제위험이 각각 10%, 20%, 30%일 경우 감사인은 고유위험과 내부통제제도의 평가과정에서 실수가 없었는지를 재차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감사절차를 종결지을 수 없다.

(5) 감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내부통제제도가 취약하다고 판단한 감사인은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수조사를 통하여 내부통제제도를 평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다.

(6) 회사의 임직원에 의한 내부공모, 위조 또는 변조 등 문서의 허위성 여부에 대한 조사 및 판단은 재무제표 감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7) 회사의 내부통제제도가 취약하다면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

(8) 특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특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감사인은 회사가 특기사항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9) 동일한 회계기간의 동일한 회사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계법인이 감사할 경우에 중요성 기준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10) 재무제표의 검토는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 제한된 절차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작성되었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 경우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정도로 중요한 예외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질문과 분석적 절차만으로도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12) 검토는 검토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것에 대한 보통수준의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되며, 이와 같은 확신은 소극적 확신의 형태로 보고서에 표시된다.

(13) 동일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검토업무의 경우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에 비하여 중요성의 판단기준을 완화해서는 안된다.

**(물음 2)** 현대 회계감사는 기업의 내부통제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1) 감사인이 내부통제에 의존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취하여야 하는 절차와 2) 감사인이 내부통제에 의존하게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효익과 비용을 서술형 문장으로 6줄 이내로 쓰시오. (단순 열거형보다는 문장의 형태로 서술하시오.)

**【문제 2】(18점)**

**(물음 1)** 다음 각 사례는 서로 독립적이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감사인은 어떤 감사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보기에서 찾아 그 번호 및 판단의 근거를 기재하시오. 단, 주어진 상황 이외의 모든 것은 적절하게 회계처리되고 감사되었다고 가정한다. 또한 감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기사항으로 기재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가능하면 특기사항을 기재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  |  |
| --- | --- |
| **< 보 기 >** | |
| 번호 | 내 용 |
| ①  ② | 특기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이 포함된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
| ③    ④ | 중간문단이 추가되고 의견문단이 변형된 한정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이 포함되며, 중간문단이 추가되고 의견문단이 변형된 한정의견 감사보고서 |
| ⑤  ⑥ | 중간문단이 추가되고 범위문단과 의견문단이 변형된 한정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이 포함되며, 중간문단이 추가되고 범위문단과 의견문단이 변형된 한정의견 감사보고서 |
| ⑦  ⑧ | 중간문단이 추가되고 의견문단이 변형된 부적정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이 포함되며, 중간문단이 추가되고 의견문단이 변형된 부적정의견 감사보고서 |
| ⑨ | 의견거절 감사보고서 |
| ⑩ | 감사계약 해지 |

**<답안양식>**

|  |  |  |
| --- | --- | --- |
| 사례 | 번호 | 판단의 근거 |
| 사례 1 |  |  |
| 사례 2 |  |  |
| 사례 3 |  |  |
| 사례 4 |  |  |
| 사례 5 |  |  |
| 사례 6 |  |  |

**<사례 1>** 회사는 당해연도에 처음으로 감사를 받게 되어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현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감사인은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재고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기초 재고자산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하였으나 담당공인회계사의 실수로 금액적으로 중요한 기초 현금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중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하였다. 내부통제제도의 경우 소규모 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평가를 생략하고 적절한 계획에 따라 입증절차를 수행하였다. 감사결과 상기 이외의 중요한 예외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례 2>** 당해연도의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갑을 회계법인은 회사와의 독립성에 감사계약 당시 인지하지 못하였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말감사 중에 인지하게 되었다. 즉, 감사를 수행하는 팀 이외의 다른 부서에서 기중에 회사의 자산·자본·그 밖의 권리 등의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동 자산 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및 그 매도거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발행한 후 수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또한 당해 매도거래는 감사수행일 현재 진행 중이며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사례 3>** 갑(주)의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ABC 회계법인은 갑(주)의 매출 3,000억원(기말 현재 매출채권잔액은 500억원)의 전부가 갑(주)의 100% 출자회사인 을(주)에 대한 매출인 것을 알게 되었다. ABC 회계법인은 적절하게 채권·채무 조회서를 발송하여 감사현장 철수일 이전에 이를 회신받고, 그 이외에도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적절한 절차를 수행하였다. 감사인은 갑(주)의 매출액은 적정하지만 매출채권의 경우 을(주)의 재무상태로 볼 때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한다. 을(주)의 재무상태는 수년 전부터 좋지 않았지만 특히 당해연도에 들어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나 갑(주)는 전년도에도 유사한 상황이었지만 당해연도 동안 채권을 회수하고 새로운 매출을 하는 등 활동적인 거래가 있는 만큼 현재의 매출채권도 내년 중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갑(주)는 을(주)와의 거래 및 기말 현재 채권잔액의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고 있다. 감사인은 갑(주)의 당해연도 매출채권 잔액이 왜곡되었을 경우 재무제표 전체를 왜곡시킬 만큼 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사례 4>** 갑(주)는 컴퓨터를 생산하여 판매하며, 2x10년 12월 31일이 결산일이다. 갑(주)는 기말 현재 3년 전에 생산하였으나, 판매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500억원(총 재고자산은 3,000억원)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다. ABC 회계법인은 이들 재고가 정상적인 가격에 판매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만, 회사는 적절한 구매처만 만나면 정상적인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BC 회계법인의 담당공인회계사가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비교가능한 제품의 현재 시장거래 가격은 220억원으로 추정되며, 여러 경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말감사를 수행하던 중 ABC 회계법인은 당해 진부화된 재고자산 중 50억원이 갑(주)의 100% 출자회사인 을(주)에 재무상태표일 이후 55억원에 외상으로 판매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나머지 진부화된 재고자산에 대하여도 2개월 이내에 을(주)에 520억원에 판매하기로 계약된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을(주)는 폐기물처리업체이며 당해 거래 당시 자본이 잠식된 상태로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다. 갑(주)는 현재 감사받고 있는 재무제표를 수정할 의사가 전혀 없다. 감사인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200억원 이상이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중요성 기준의 2배를 초과하는 예외사항에 대하여는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사례 5>** 갑(주)는 건설업을 영위하며, 2x10년 12월 31일이 결산일이다. 갑(주)에 대한 감사를 처음으로 수행하는 ABC 회계법인의 담당공인회계사는 기말 입증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북유럽 건설현장의 재고자산 및 장비 등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누락하였다. 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감사절차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다. 주주총회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유럽의 화산폭발로 유럽행 비행기는 모두 결항되었으며 향후 1개월 이내에 비행편을 구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주주총회 일정을 더 이상 연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북유럽 건설현장의 재고자산 및 장비 등이 갑(주)의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총자산의 30%로서 업무담당이사 공인회계사는 이것이 왜곡되었을 경우 재무제표 전체를 왜곡시킬 만큼 특히 중요한 사항이며 실사 이외의 방법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업무담당이사 공인회계사는 갑(주)의 경영자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자는 이는 전적으로 감사인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인은 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직전연도의 감사인은 적절한 시기에 모든 해외 건설 현장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였으며, 북유럽의 건설현장은 2x10년 중에 새롭게 시작한 현장이다. 업무담당이사 공인회계사가 회계법인 내부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감사보고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계법인의 예상 피해액이 워낙 막대하여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갑(주)로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ABC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례 6>** 갑(주)는 사무용 의자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2x10년 12월 31일이 결산일이다. 갑(주)에 대한 감사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ABC 회계법인의 담당공인회계사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적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하고자 한다. 연결 대상 종속회사 중 유럽 현지법인인 유레카 Ltd.의 재무제표감사는 현지 감사인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었다. 담당공인회계사는 당해 현지 감사인이 현지 지역에 국한된 소규모 회계법인이며, 개업 이후 첫 감사 거래처가 유레카 Ltd.인 것을 알게 되었다. 유레카 Ltd.가 연결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산총계와 매출액 기준 모두 15%를 초과한다. 따라서 ABC 회계법인은 연결재무제표 감사를 위하여 현지에 공인회계사들을 직접 파견하여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유레카 Ltd.의 재무제표는 현지 회계기준에 따르면 적정하지만, 갑(주)와 다른 종속회사가 따르고 있는 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 중 20%가 과대계상되었다. 이러한 자산의 과대계상이 유레카 Ltd.의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요하지만 갑(주)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다”*

갑(주)의 경영자는 유레카 Ltd.로 인한 어떤 사항도 수정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배회사와 유레카 Ltd.를 제외한 모든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는 ABC 회계법인이 감사하였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었다.

**【문제 3】(16점)**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월말 결산법인인 (주)대한의 최대주주는 현 대표이사인 김대한이며, 특수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체로서 최근 조선 경기의 불황으로 상장폐지의 위기에 몰려 있다. 2x10년말 현재 선박건조와 관련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선박건조**  **작업** | **작업 진행상황** | **선박건조대금** | **대금 수취** | **발주처** |
| (09-1) | 작업완료/인도 | 102억원 | 전액 수취 | (주)강화 |
| (09-2) | 작업완료/인도 | 42억원 | 전액 수취 | (주)강남 |
| (09-8) | 작업완료/미인도 | 56억원 | 전액 미수취 | (주)강북 |
| (09-9) | 작업완료/미인도 | 34억원 | 전액 미수취 | (주)강서 |
| (10-3) | 당기 신규수주/  건조작업 진행중 | 240억원 | 일부 수취 | (주)강동 |
| (10-5) | 당기 신규수주/  건조작업 진행중 | 87억원 | 일부 수취 | (주)강중 |

**(물음 1)** 이 회사가 건조작업이 진행중인 선박의 원가를 실제보다 많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진행률을 높이는 경우, 당기에직접적으로 왜곡표시 될 위험이 있는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

**(물음 2)** 대금을 전액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 선박건조작업 (09-1), (09-2)에 대해 실제 대금 수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입증절차를 기술하시오.

**(물음 3)** 담당공인회계사는 선박 건조작업별 원가의 발생사실 및 원가귀속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1) 선박별 원가발생에 대하여 원시증빙을 확인, (2) 발생한 원가에 대한 분석적 절차수행, (3) 선박건조작업별 원가명세서와 관련 장부대조, (4) 선박 발주처에 조회서 발송, (5) 건조작업 현장책임자로부터 진행률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여 회계상의 진행률과 비교, (6) 선박별 원가의 발생 및 선박 건조작업 간에 부당하게 원가를 이체한 사실이 없다는 경영자확인서의 징구 등의 입증절차를 수행하려고 한다.

이 중 적절하지 않은 절차가 있으면, 아래 양식에 따라 그 번호를 쓰고 판단의 근거를 서술하시오.

**<답안양식>**

|  |  |
| --- | --- |
| 번호 | 판단의 근거 |
| .  .  . | .  .  . |

**※ 다음은 (물음 4)~(물음 7)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이다.**

상기 선박건조작업 (09-8) 및 (09-9) 발주처의 대출금 및 카드대금의 연체, 폐업 등의 사유로, 미수취한 선박건조대금 전액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감사인은 2x11년 3월 23일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 인하여 회사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것을 우려하여 2x11년 3월 27일 선박건조대금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은행 지점장이 서명날인 한 다음과 같은 '보통예금거래내역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였다. 회사는 선박건조대금을 전액 회수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이 동액만큼 증가하여 상장폐지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해 줄 것을 감사인에게 요청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통예금거래내역서**  ㅇ 계좌번호 : 038-01-13-68108  ㅇ 성 명 : (주)대한  ㅇ 출력기간 : 2x11.3.27~2x11.3.27  (단위:억원)   |  |  |  |  |  |  | | --- | --- | --- | --- | --- | --- | | 거래일자 | 처리구분 | 입금 | 출금 | 잔액 | 적요(입금자/출금자) | | 2x11.3.27 | 신규 |  |  |  |  | | 2x11.3.27 | 예금불입 | 56 |  | 56 | 038-01-21-50595 김대한 | | 2x11.3.27 | 예금불입 | 34 |  | 90 | 038-01-21-50595 김대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물음 4)** 담당공인회계사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위의 ‘보통예금거래내역서’를 검토한 바, 선박건조대금 회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물음 5)** 상기 선박건조작업 (09-8) 및 (09-9)의 선박건조대금 회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공인회계사가 수행하여야 할 감사절차를 3줄 이내로 기술하시오.

**(물음 6)** 이 같은 상황에서 (주)대한의 요청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수행한 감사절차의 결과와 관련지어 답하시오.

**(물음 7)** 담당공인회계사는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지만, 기말감사가 집중되는 기간이어서 입수한 모든 감사증거를 감사조서에 취합하여 놓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회계감사기준에서는 감사인이 ‘감사조서의 보안유지, 안전보관 및 일정기간 보존을 위한 적합한 절차’를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감사조서의 취합기간을 정하고, 감사조서에의 접근과 감사조서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 4】(13점)**

다음은 (주)개발의 2x1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차입금 관련 입증감사조서의 일부로서, 차입금 관련 담당공인회계사인 김신입 회계사가 작성하였다.

회계법인의 업무담당이사는 김신입 회계사가 아직 감사경험이 풍부하지 못해 조서 작성에 많은 오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현장책임공인회계사에게 철저히 조서를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특히 감사업무의 유효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김신입 회계사가 수행한 감사절차의 **(1)충분성 및 적절성 여부**와 더불어 **(2)과도한 절차**를 수행한 것이 없는지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김신입 회계사는 조서 작성의 효율성을 위해 조서상에 자신이 수행한 감사절차를 단순히 메모 형식으로 기술하지 않고, 주로 약자(tickmark 또는 t/m)를 사용하여 그 세부 내용을 기록하였다(단위: 원).

**조서번호: A1 "차입금 총괄표 (leadsheet)"**

|  |  |  |  |  |
| --- | --- | --- | --- | --- |
| 과목 | 당기(2x10/12/31) | | | 전기  (2x09/12/31) |
| 수정전 | 수정사항 | 수정후 |
| 차입금 | 600 | 100 ***{cc}*** | 700 | 940 ***{bb}*** |

**조서번호: A2 "차입금 변동내역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행명 | | 2x09/12/31 | | 증가 | | 감소 | | 2x10/12/31 | |
| A |  | 940 |  | - |  | (240) | ***{d}*** | 700 |  |
| B |  | - |  | 100 |  | (100) | ***{d}*** | - |  |
| C | ***{e}*** | - |  | 20,000 | ***{c}*** | - |  | - | ***{b}*** |
| 합계 | | 940 | ***{a}*** | 20,100 |  | (340) |  | 700 |  |

**조서번호: A3 "차입금 상환 내역 테스트"**

|  |  |  |  |
| --- | --- | --- | --- |
| 번호 | 지출 결의서 | 지급일자 | 지급금액 |
| 1 | 12345 | 2x10/1/31 | 20 ***{g}*** |
| .  .  . | .  .  . | .  .  . | .  .  . |
| 6 | 17021 | 2x10/6/15 | 100 ***{g}*** |
| .  .  . | .  .  . | .  .  . | .  .  . |
| 13 | 26789 | 2x10/12/31 | 20 ***{g}*** |
| 합계 | - | - | 340 |

**조서번호: A4 "미래 상환 스케쥴"**

메모: 미래 상환 스케쥴은 회사 담당자가 작성하였으며, 차입금약정서와 대조하여 확인하였음.

|  |  |  |  |
| --- | --- | --- | --- |
| 상환연도 | A은행 | C은행 | 합계 |
| 2x11 | 240 | 2,000 | 2,240 ***{f}*** |
| .  .  . | .  .  . | .  .  . | .  .  . |
| 2x15 | - | 2,000 | 2,000 ***{f}*** |
| 이후 | - | 10,000 | 10,000 ***{f}*** |
| 합계 | 700 | 20,000 | 20,700 |

**조서번호: A5 "은행조회서 대조"**

|  |  |  |  |
| --- | --- | --- | --- |
| 은행명 | 은행조회서 | 장부가액 | 차이 |
| A | 700 | 700 | - |
| B | - | - | - |
| C | 20,000 | - | (20,000) ***{c}*** |
| 합계 | 20,700 | 700 | (20,000) |

**Tickmark** (수행한 감사절차에 대한 설명)

|  |  |
| --- | --- |
| **t/m** | **내 용** |
| ***{aa}*** | 회사제시 시산표와 일치함. |
| ***{bb}*** | 차입금은 전기 940원, 당기 700원으로서 당기 중 감소액 240원은 타당함. 추가적인 감사절차는 필요 없음. |
| ***{cc}*** | 수정사항은 양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감사절차는 필요 없음. |
| ***{a}*** | 전기 감사조서와 대조한 결과 예외사항 없음. |
| ***{b}*** | 합계를 검증하였으며, 회사의 총계정원장의 기말잔액과 일치함을 확인함. |
| ***{c}*** | 회사의 재무담당임원인 박자금씨와 논의한 바에 따르면, (주)개발은 2x10/8/31일자로 20,000원을 차입하는 약정서를 C은행과 체결하였음. 차입개시일과 차입금액을 회사가 제시한 차입약정서 사본과 대조하였으며, 또한 20,000원은 은행조회서와 대조한 바 일치하였음. |
| ***{d}*** | '차입금 상환 내역 테스트' 조서를 참조할 것. |
| ***{e}*** | C은행 차입금 20,000원에 대해서는 매 연도말 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C은행은 동 차입금에 대한 조기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바, 2x10/12/31 현재 회사의 부채비율은 250%로서 이 차입조건에 위배되어 있음. 그러나 회사 재무담당임원에 따르면 C은행은 이러한 부채비율 유지조건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하여 조기상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구두로 (주)개발에 통보하였으나, 문서로 이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지는 아니하였음. 따라서, 이러한 차입조건 위반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 ***{f}*** | 감사보고서상의 차입금 관련 주석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과 대조한 결과 예외사항 없음. |
| ***{g}*** | 표본추출법에 따라 2건의 월별 상환액을 표본으로 적절하게 추출하였으나, 회사 담당자로부터 모든 월별 현금상환액 명세 및 관련 증빙을 입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표본조사 대신 13건 전체에 대해 전수검사를 통해 현금지급내역의 세부내역을 확인하였으며 이상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음. 재무제표는 중요하게 잘못 작성되어 있지 아니함. |

**(물음 1)** (주)개발의 현장책임공인회계사인 이검토 회계사는 김신입 회계사가 작성한 상기 감사조서를 검토하고, 감사절차상의 미비점 또는 보완할 사항을 김신입 회계사가 작성한 각각의 t/m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아래 빈칸에 기록될 미비된(또는 보완할) 감사절차의 상세내용을 각 t/m별로 2줄 이내로 기술하시오. (아래에 기술된 미비된/보완할 감사절차의 유형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미비점 또는 보완점을 기술할 것. 차입금과 관련된 미지급비용 및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에 대한 내용은 아래 답변에서 고려하지 말 것)

**현장책임공인회계사의 검토내용 (Review note)**

|  |  |  |
| --- | --- | --- |
| **t/m** | **미비된/보완할 감사절차의 유형** | **미비된/보완할 감사절차의 상세내용** |
| *답안예시*  ***{aa}*** | *감사조서 작성 방식 (문서화)* | *이 tickmark가 감사조서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음* |
| ***{bb}*** |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  |
| ***{cc}*** | 적절한 감사확신 |  |
| ***{b}*** | 적절한 감사절차 |  |
| ***{c}*** | 1.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  |
| 2.적절한 감사절차 |  |
| ***{e}*** |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  |
| ***{g}*** | 1.효율적인 감사업무 |  |
| 2.적절한 감사조서 작성 |  |

**(물음 2)** 상기 tickmark ***{e}***와 관련하여, 만약 C은행이 부채비율 유지조건의 면제를 취소하고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동 차입금 전체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의구심이 든다고 가정할 경우, 감사인이 취해야 할 주요 감사절차 2가지를 각각 2줄 이내로 기술하시오.

**(물음 3)** 다음은 은행조회서(조서번호: A5 참조) 발송과 관련하여 김신입 회계사와 이검토 회계사가 나눈 대화 내용이다. 김신입 회계사의 응답을 토대로 그가 수행한 은행조회서와 관련된 감사절차가 적절하였는지 여부와, 그 판단의 근거를 아래의 답안 양식을 이용하여 각각 2줄 이내로 기술하시오.

|  |
| --- |
| ▪이검토: 은행조회서를 보낼 대상 은행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김신입: **(응답1)** 기말 현재 잔액이 있는 은행을 선정했고, 기중 거래가 있었으나 기말에는 잔액이 없는 은행도 역시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은행에 대해서는 조회서를 직접 발송하였는지요?  ▪김신입: **(응답 2)** 예. 제가 직접 재무담당자로부터 은행의 우편물 발송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여 동 주소로 직접 조회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회사로부터 은행 주소를 받았으므로 동 주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절차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검토: 감사조서를 보니까 A은행의 은행조회서는 사본이 철해져 있던데 어떻게 된 것인지요?  ▪김신입: **(응답 3)** 예. 맞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우선 제가 은행 담당자를 통해 사본을 팩스로 먼저 입수하고 동 사본에 포함된 내용을 은행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여 확인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조서에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

**<답안양식>**

|  |  |  |
| --- | --- | --- |
| 김신입의응답 | 감사절차의 적절성  (예 또는 아니오) | 판단의 근거 |
| 응답1 |  |  |
| 응답2 |  |  |
| 응답3 |  |  |

**【문제 5】(15점)**

분석적 절차에 대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분석적 절차는 감사계획 단계에서의 분석적 절차(이하 “A”), 입증절차로서의 분석적 절차(이하 “B”) 및 감사의 종결단계에서 전반적 검토를 위한 분석적 절차(이하 “C”)로 나뉘어지는 바, 다음 표의 두 번째 열에서는 이러한 분석적 절차와 관련된 세 가지 질문을, 그리고 세 번째 열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응되는 가능한 방안들이 열거되어 있다.

|  |  |  |
| --- | --- | --- |
| **질문** | **질문내용** | **가능한 방안** |
| 가 | 당해 절차를 수행할 가장 적절한 회계사는? | 1. 현장책임공인회계사    2. 계정 담당공인회계사 |
| 나 | 당해 절차가 수행되는 주목적은? | a. 거래와 계정잔액에 중요한 왜곡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감사확신을 얻기 위해  b. 회사의 사업에 대하여 감사인이 파악한 내용과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 재무제표의 비정상적인 변동을 확인하고 감사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
| 다 | 당해 절차가 중점적으로 수행되는 대상 및 절차의 주요 내용은? | ① 전체로서의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가 적절히 표시되고 공시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② 재무제표 본문에서 각 별도 항목(line item)으로 표시되는 계정잔액 및 이들 계정간의 관계  ③ 특정 계정잔액 및 이들과 독립된 예측치 간의 비교 |

세 가지 유형의 분석적 절차(A, B 및 C) 각각에 대해, 아래 답안양식을 이용하여 질문 “가”에 대해서는 상기 가능한 방안 중 1 또는 2를 선택하고, 질문 “나”에 대해서는 a, b 또는 c를 선택하고, 질문 “다”에 대해서는 ①, ② 또는 ③을 선택하시오.

**<답안양식>**

|  |  |  |  |
| --- | --- | --- | --- |
| 질문 | 계획단계(A) | 입증절차(B) | 종결단계(C) |
| 가 |  |  |  |
| 나 |  |  |  |
| 다 |  |  |  |

**(물음 2)** 다음에 기술된 분석적 절차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지 여부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면 그 근거를 아래의 답안양식을 이용하여 간략히 2줄 이내로 기술하시오.

|  |  |
| --- | --- |
| **번호** | **분석적 절차에 대한 설명** |
| 1 | 계정잔액 뿐만 아니라 공시사항 중 금액의 과대계상 및 과소계상에 대한 경영자의 주장을 테스트하는 절차로 활용될 수 있다. |
| 2 |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계정이 재무상태표계정보다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
| 3 | 이용가능한 정보의 원천과 관련하여, 회사와 독립된 원천은 내부적 원천보다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 |
| 4 | 회사의 정보가 상세하게 구분될수록 예측치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
| 5 | 비재무적 정보의 입수가능성도 분석적 절차 수행시 고려하여야 한다. |
| 6 | 필요한 충분한 수준의 감사확신을 얻을 수 있는 예측치를 추정할 수 없을 때에는, 더 정확한 예측치를 위해 모집단을 세분화한다. |
| 7 | 테스트 대상 계정과 관련된 내부통제절차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입증절차로서의 분석적 절차가 세부시사보다 효과적인 감사절차가 된다. |
| 8 | 영업환경이 불안정한 회사보다 안정적인 회사에서 분석적 절차가 더 효과적인 감사절차로 활용될 수 있다. |

**<답안양식>**

|  |  |  |
| --- | --- | --- |
| 번호 | 적절한지의 여부 (예 또는 아니오) | 적절하지 않을 경우, 그 판단 근거 |
|  |  |  |

**(물음 3)** (주)분석의 현장책임공인회계사인 이하늘 회계사는 매출계정에 대해 입증절차로서의 분석적 절차를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매출계정 담당공인회계사인 김바다 회계사에게 이와 관련된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이를 조서화하도록 지시하였다. (주)분석의 차량매출과 관련된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분석은 세 종류의 차량을 판매하고 있으며, 차량매출에 대해서 입증절차로서의 분석적 절차를 통해서 테스트할 것이다.  ▪차량 판매대수는 평균적으로 전기(2x09년) 대비 5% 증가하였다.  ▪차량 판매대수는 모든 차종 공통으로 5개 지역에서 20% 이상 증가하였다.  ▪Truck차종은 경쟁이 심화되어 차량 판매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당기에 평균 판매단가가 전기 대비 5% 인하되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판매대수가 증가되어 결국 매출액 대비 매출총이익율은 전기와 동일한 8%가 되었다.  ▪Van차종의 평균 판매단가는 2x10년 7월 1일자로 전기 대비 10% 인상되었으며 (2x10년 상반기 평균 판매단가는 전기와 동일함), 통상적으로 (주)분석의 차량은 1년 동안 매 월별로 균등하게 판매가 이루어진다.  ▪Mini차종의 주요 거래처는 렌탈회사로서 당기에 신규 고객으로 확보한 (주)독도렌트카에서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을 요구한 바, 동 거래처에 당기 중에 판매한 차량 50,000대는 전기 대비 20% 인하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나머지 Mini차량의 당기 평균 판매단가는 전기와 동일하다.  ▪모든 차종에 대해 당기부터 판매보증기간을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함에 따라 당기 판매 차량부터 향후 평균 10%의 판매보증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아래 표에 제시된 전기(2x09년) 차량 평균 판매단가 및 당기(2x10년) 차량 판매대수는 적절한 감사절차를 통해 그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  |  |  |  | | --- | --- | --- | --- | | **차종** | **2x10년**  **차량매출 장부계상액**  **(단위: 원)** | **2x10년 차량 판매대수**  **(단위: 대)** | **2x09년**  **차량 평균 판매단가**  **(단위: 원)** | | Truck | 1,000,000 | 20,000 | 60 | | Van | 780,000 | 11,000 | 70 | | Mini | 2,090,000 | 104,000 | 20 | |

상기 정보를 토대로 입증절차로서의 분석적 절차를 수행하여, 2x10년 각 차종별 감사인의 추정매출액을 계산하시오.

**<답안양식>**

|  |  |
| --- | --- |
| 차종 | 감사인의 2x10년 추정매출액 |
| Truck |  |
| Van |  |
| Mini |  |

**(물음 4)** (주)검토의 급여에 대해 적절한 감사증거를 활용하여 입증절차로서의 분석적 절차를 수행한 결과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원)   |  |  |  |  |  | | --- | --- | --- | --- | --- | | **①급여의 장부가액** | **②급여의 감사인의 예측치** | **③차이금액** **(=②-①)** | **④허용가능**  **차이금액** | **⑤허용가능 차이금액 초과액** **(=③-④)** | | 1,500,000 | 2,000,000 | 500,000 | 100,000 | 400,000 |   상기 허용가능차이금액을 초과하는 차이금액인 400,000원에 대해 (주)검토의 경영진에게 질문을 한 바, 다음과 같은 답변을 입수하였다.   |  | | --- | | <답변내용>  당기 중에 새로운 영업담당 임원을 영입하였는 바, 동 임원에게 영입보너스(signing bonus) 25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계상하였다. | |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인이 비정상적 항목을 조사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절차 2가지를 기술하시오. (각 절차별로 2줄 이내로 기술하시오)

**【문제 6】(13점)**

회계감사의 효익에 대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정보위험(information risk)의 정의를 기술(3줄 이내)하고, 어떻게 회계감사가 정보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를 설명(5줄 내외)하시오.

**(물음 2)**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이어, 신국제감사기준(new ISA)을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들 국제기준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얻을 수 있는 효익을 (물음 1)의 답안과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답하시오.

**※ 다음은 (물음 3) 및 (물음 4)에 관한 내용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신혁은 안정적이나 수익성은 높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며,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에 따르면 2x10년 12월 31일 현재 자산총계는 700억원, 부채총계는 500억원이다. 회사는 매우 혁신적인 신사업에 진출하기로 하였다. 신사업에 100억원을 투자하면, 만 1년 뒤의 투자성과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단, 화폐의 시간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  |  |  | | --- | --- | --- | | **상 황** | **확 률** | **신사업부의**  **시장가치** | | 성 공 | 70% | 300억원 | | 실 패 | 30% | 0원 |   (주)신혁은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에 100억원을 대출 신청하였다. 한편, 은행은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받지 않은 상태의 2x10년 12월 31일 현재 (주)신혁의 진정한 순자산가치를 0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은행은 (주)신혁에게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받지 않으면 100억원을 만기 1년, 대출이자 50억원의 조건으로 대출해야 하나, 감사를 받으면 이자율을 낮추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ABC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결과, 2x10년 12월 31일 현재 (주)신혁의 기존 사업부의 자산총계는 감사보수 차감 후 550억원, 부채총계는 500억원으로 확인되었다. (주)신혁의 기존 사업부의 영업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1년 뒤에도 순자산가액은 동일하며, 감사 받은 순자산가액은 시장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

**(물음 3)**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통한 이자 절감액을 감사의 효익으로 간주할 경우, (주)신혁이 ABC 회계법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감사의 효익은 얼마인가? 단, 감사실패의 가능성은 없다고 가정하시오.

**(물음 4)** 이제는 감사실패의 가능성이 5%인 보다 현실적인 경우를 고려한다. 즉, (주)신혁의 진정한 순자산가액이 0원이지만, 결과적으로 ABC 회계법인이 이를 50억원으로 잘못 확인할 확률은 5%이다.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통한 이자 절감액을 감사의 효익으로 간주할 경우, (주)신혁이 ABC 회계법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감사의 효익은 얼마인가?

**【문제 7】(15점)**

통제절차에 대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내부통제제도를 구성하는 통제절차(control

procedures)의 정의를 3줄 이내로 기술하시오.

**(물음 2)** 통제절차에는 다음의 대표적인 유형이 있다. 각각의 유형에 대하여 개념을 설명하고, 그 사례를 각각 2개씩 제시하시오.

**<답안양식>**

|  |  |
| --- | --- |
| 유 형 | 개념과 구체적 사례 |
| 업무분장  (separation of duties) |  |
| 승인  (authorization) |  |
| 문서화  (documentation) |  |
| 제한적 접근  (safeguard of assets) |  |
| 내부검증  (independent verification) |  |

**(물음 3)** 김통제 회계사는 (주)대충의 내부통제제도의 설계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감사절차를 실시하고, 다음의 세 가지 통제절차에서 설계상의 취약점을 발견하였다. 취약점의 내용을 설명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시오.

(1) 고객주문서를 접수하면, 영업부서는 고객의 신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 판매지시서를 작성한다. 판매지시서에는 사전에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2) 회계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을 승인한다.

(3) 구매부서는 구매요청부서장이 승인한 구매요청서를 받으면, 요청된 물품을 최적의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사전에 일련번호가 부여된 구매주문서를 2부 작성하여, 검수부서와 구매요청부서에 각각 1부씩 송부한다.

**<답안양식>**

|  |  |
| --- | --- |
| 번호 | 취약점 및 개선책 |
| (1) |  |
| (2) |  |
| (3) |  |

**-끝-**

여 백

여 백

여 백